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군 ○○○○○○단 지방○○○○ ○○○
(전 ○구 ○○○과)

②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3.부터 2015. 12. 4.까지, 지방○○○○○
○ ○○○은 2016. 1. 13.부터 2017. 1. 15.까지 각각 ○구 ○○○과에서 어촌관광
활성화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민간 전문가인 사무장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활력 증진 및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
체험마을과 사무장 간에 채용계약을 체결하며,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마
울의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사무장에게 어촌체험마을에서 매월 급여
1,2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를 지급하고, 4대보험(자부담) 가입 및 퇴직급
여 충당금(자부담)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표1]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누
계 4명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활동 안내 지도, 홍보·마케팅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현황

어촌체험마을명	사무장 채용 현황			
	성 명 (채용기간)	주 소	연령	성별
○○어촌체험마을	○○○ (’14.11.~현재)	울산광역시 ○구 ○○2길 00		
○○어촌체험마을	○○○ (’15.1.~’15.12.)	울산광역시 ○구 ○○2길 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1. 사무장 급여 지급 부적정 등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지급은 1인당 월 1,2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급여 지급방법은 시·군에서 어촌체험마을의 협약서 및 채용상황,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되, 마지막 분기(월) 보조금은 사업정산 이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인터넷 बैं킹 활용)하여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구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매 분기(월) 어촌체험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마지막 달인 12월분 사무장 급여의 지급을 확인하는 등 사업정산 이후 마지막 분기(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구는 [표2]와 같이 ○○어촌체험마을이 사무장에 대한 급여를 분기 1회 후불제로 지급하는 등 사업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연도 마지막 달인 12월분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사무장 급여 지급 부적정 등 현황

연도	월별 급여지급 현황												마지막 보조금 지급 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3.25		6.23		10.29		사업비 부족으로 해당 없음						'15.8.28
2016	4.5		6.20			10.20			12.2				'15.12.2
2017	4.24		6.26			10.20			12.12				'15.12.8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2. 사무장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 부적정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장 채용에 따른 급여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도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총당금을 어촌체험마을 부담으로 가입 및 적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퇴직 시 총당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는 ○○어촌체험마을이 '14. 12월 ~ '15. 7월 기간에 퇴직급여 총당금을 매월 적립하지 않고 '15. 7. 10.에 일괄 적립(700천원)하고, '16년도에는 퇴직급여 총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사업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장 급여의 매월 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및 4대보험 가입 등 사업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